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18
----------	------

제출년월일 : 2012. 4. .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9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시민중심의 법규로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재래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고
- 나.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이 미치는 지역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도(폐지)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도(신설)
- 다. 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에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 신설
 - 국유지·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80%) : 안 제36조의2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전액감면) : 안 제36조의3
-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지침에 따라 용어 등 정비

- 12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합의 : 해당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2. 2 . 17 ~ 3 . 8)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충주시 전통시장
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구역·상점가의 개
설, 관리와 운영,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시장의 구역)”을 “(전통시장의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도매업·소매업·용역업”
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를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
포등”으로, “규칙”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충주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를 “충주시장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유
자나 대표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지정하려면”으로,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를 “범위에서 지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위를 정할 때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으면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폭 12미터 미만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으면 격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제1항 중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을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
업”을 “충주시장은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에 따라 상권 활성화 사
업”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을 “충주시장은”으로, “그 재산”을

“재산”으로, “상인조직 또는”을 각각 “상인조직이나”로, “요구하는 경우에는”을 “요구하면”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범위에서”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을 “필요한 비용 전부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는 전문업체를 통해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 · 가스 ·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를 하여야 한다.

⑤ 충주시장은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의 업무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에 의한다”를 “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주차장법」 및”을 “「건축법」, 「주차장법」,”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불연재 혹은”을 “불연재나”로, “건축 · 소방 · 도로법 등 관련”을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터 확보가 곤란하면”으로,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 운영”을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또는 상인조직 ·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을 “충주시장이나 상인조직 ·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로, “고객 및”을 “고객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 ·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 · 소매업 · 용역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을 “상가건물이나 복합형 상가건물이면 판매 · 영업시설”로, “연면적”을 “전체면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정”을 “계산해서 정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을 “하면 각각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매업 ·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도매업 · 소매업 · 용역

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을 “구분하여야 하며, 1필지 중 일부가 포함되었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을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공동시설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지”를 “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을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을 “상권”으로, “공동시설 및”을 “공동시설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정된”을 “계산해서 정한”으로,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대지나 건축물의 전체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전체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될 때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제8조의 제목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를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지”를 “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을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교육연구 및”을 “그 밖의 교육연구와”로, “도매업 ·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도매업 · 소매업 · 용역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시장은”을 “충주시장은”으로,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충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

제3장의 제목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을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시장 활성화구역의 요건)”을 “(상권 활성화 구역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 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을 “상권 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이나”로, “형성함으로서”를 “형성함으로써”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시장 활성화구역의 범위)”를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 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을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이면 등록·인정된 범위, 상점가면”으로, “하되 시장 및”을 “하되, 시장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절차)”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절차)”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은 규칙”을 “규칙”으로,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을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려면 충주 시장은”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시장 활성화구역의 관리)”를 “(상권 활성화 구역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은 시장 활성화구역”을 “충주시장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을 “충주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연면적”을 “전체면적”으로, “자(시장은 제외한다)는 시장”을 “자(충주시장은 제외한다)는 충주시장”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장이”를 “충주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지 및”을 “유지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 및”을 “청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을 “안전유지와 고객·인근 지역”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충주시장은”으로, “해당될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허위, 기타”를 “거짓, 그 밖의”로, “등록한 경우”를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휴업한 경우”를 “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우”를 “때”로 한다.

제18조 중 “시장은”을 “충주시장은”으로, “점포 또는”을 “점포나”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조리물)”로 한다.

제19조 중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지역”을 “충주시”로 한다.

제20조 중 “해당 시”를 “충주시”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

을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로 한다.

제21조 중 “시장은 제18조에 의해”를 “충주시장은 제18조에 따라”로, “점포 또는”을 “점포나”로, “운영할 경우”를 “운영하면”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을 “상인회 설립과 등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시장·시장 활성화구역·상점가”를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상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인”을 “1명”으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을 “실제로 영업하는 상인이 회원이 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규약 또는”을 “규약이나”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를 “정하며”로,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를 “제12조제5항을 포함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을 “변경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한 경우”를 “변경할 때”로,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설립할 때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으로,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을 “등록하려면”으로,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를 “사무소가 있는 곳에 설립등기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를 “수,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로, “구비하여 시장”을 “갖춰 충주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을 “자가”로, “선출한 경우”를 “선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교리전파 또는”을 “교리전파나”로, “운영하는 경우”를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규모점포 또는”을 “대규모점포나”로, “요건을 상실한 경우”를 “요건 상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소한 경우 시장”을 “취소하였으면 충주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이 제1항 제1호 빛”을 “제1항제1호와”로,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을 “취소하려면 충주시장은”으로, “실시하여야”를 “거쳐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소요되는 비용의”를 “필요한 비용”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첨부하여야”를 “붙여 넣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를 “보조사업을 완료한 상인회는”으로,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를 “갖춰 놓”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5호 및”을 “제1항제5호와”로, “기산”을 “계산을 시작”으로 한다.

제28조 중 “수입 및 지출 등”을 “수입과 지출 등의”로,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을 “공개하고 회원이 요구하면”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보고 및 자료제출)”을 “(보고와 자료제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관할구역 안”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시설현대화·경영현대화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을 “요청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 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용

제29조제2항제2호 중 “결산현황 및”을 “결산현황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를 “충주시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상점가에”로, “업무를 행”을 “업무를 수행”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지 및”을 “유지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재의 예방, 청소,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와 고객·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 처리

제30조제2항 중 “시장은”을 “충주시장은”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수행하게 되면”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감안”을 “고려”로, “범위 내”를 “범

위”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시장은 시”를 “충주시”로,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를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였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을 “충주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 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하였으면 예산의 범위”로, “전부 또는”을 “전부나”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충주시장은”으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태만히 하여”를 “제을리하여”로, “높은 경우”를 “높을 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를 “발생했을 때, 다만 가벼운 화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제32조제2항 중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취소하려면”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 및”을 “법 제11조와”로,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상점가”로, “시장”을 각각 “충주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를 “정부와 시가 설치비용”으로,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을 “기반시설과 화장실 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정부 및”을 “정부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여”를 “않아”로, “시장”을 각각 “충주시장”으로, “의해 시장”을 “따라 충주시장”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를 “시설현대화사업으로”로, “의한 상인조직 및”을 “따른 상인조직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인조직에게”를 “상인조직에”로,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충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등기를 60일 이내에 마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춰 놓고 시설물의 관리와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정부 또는 시”를 “정부나 충주시”로, “시설물 및”을 “시설물과”로, “시설물의 경우,”를 “시설물은”으로, “있다 하더라도 시

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을 “있더라도 시설물을 폐기·매각하려면 반드시 충주시장”으로, “잔여가치”를 “남은 가치”로, “경우”를 각각 “때”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시장은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를 “충주시장은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상점가”로, “제104조제3항 및”을 “제104조제3항,”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로, “상인조직 또는”을 “상인조직이나”로, “위탁 관리 할”을 “위탁하여 관리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위탁하는 경우”를 “위탁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범위 및”을 “대상범위와”로, “사용료 또는”을 “사용료나”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을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할 때 입점상인,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상점”으로, “최선”을 “최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를 “마음대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징수로 인한”을 “징수 때문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충주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받은 수탁자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사용료와 경비 징수 등)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용료와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국유지·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2호와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국유지·공유지 사용료·대부료·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로 한다.

제36조의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충주시장은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과 고객이 충주시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을 주로 사용할 때에는

「주차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 중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를 “의무사항과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을 “충주시장은 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수시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을 “조사·검사 결과 바로잡아야 사항이 있으면”으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을 “발생하면 충주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받은”을 “받았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변경 또는”을 “시설물 설치, 시설물 변경,”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달한”을 “달하였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니하다고 인정되는”을 “않을”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 충주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행정절차 이행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 중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를 “법 제74조”로, “시장”을 “충주시장”으로,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다”를 “영 제35조를 따른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충주시장은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송부한다.

제41조제1항 후단 중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을 “이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충주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발부일로부터”를 “발부한 날부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를 “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충주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한다. 제42조 중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을 “독촉기간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충주시장”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를 “(이의제기와 법원으로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장”을 각각 “충주시장”으로, “법 제74조제3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로,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을 “제기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충주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지한다.

제44조 중 “부과·징수 수납”을 “부과·징수·수납”으로, “「충주시세부 과징수규칙」”을 “「충주시시세부과징수규칙」”으로 한다.

제45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 중 각각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4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 중 각각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 중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내용 중 각각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를 “위반자에게”로 “첨부”를 “붙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개설·관리 및 운영,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등록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 인정시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u>충주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u></p> <p><u>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u></p>	<p><u>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u></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구역·상점가의 개설, 관리와 운영,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소매업·용역업-----</u> ----- ----- ----- ----- <u>-----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으로-----</u> ----- <u>-----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충주시장-----</u> -----.</p> <p><u>② 충주시장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대표자-----지정하려면 -----</u> ----- <u>----- 범위에서</u></p>

830

현 행	개 정 안
<p>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폭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p>	<p>지정하여야 ----.</p> <p>③ 제2항에 따라 범위를 정할 때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으면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 일방통행로, 폭 12미터 미만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으면 격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p>
<p>제3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p> <p>① <u>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u></p> <p>② <u>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u></p> <p>③ <u>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 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 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재래 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u></p>	<p>제3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p> <p>①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과 ----- ----- -----.</p> <p>② 충주시장은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에 따라 상권 활성화 사업----- ----- -----.</p> <p>③ 충주시장은 ----- ----- ----- 재산 ----- -----상인조직이나 ----- ----- -----요구하면 -----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범위에서 -----</p>

현 행	개 정 안
<p><u>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u>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u>⑤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u></p>	<p>----- ----- -----상인조직이나 ----- -----때에는 예산의 범위 ----- -----필요한 비용 전부나 -----.</p> <p><u>④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는 전문업체를 통해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화재예방과 안전 확보를 하여야 한다.</u></p> <p><u>⑤ 충주시장은 상인조직이나 시장 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안전 관리 등의 업무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u></p>
<p>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충주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u>불연재 혹은 난연재로</u> 	<p>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 -----기준을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건축법」, -----「주차장법」, -----. 2. ----- -----<u>불연재나 -----</u>

현 행	개 정 안
<p>시공하여야 하며, <u>건축·소방</u> · <u>도로법</u>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p> <p>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u>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u></p> <p>4. • 5. (생 략)</p> <p>② <u>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 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u></p> <p>제5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인정 시장은 <u>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u></p>	<p>----- 「건축법」, 「소방 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p> <p>3. -----</p> <p>-----</p> <p>--- 터 확보가 곤란하면 -----</p> <p>-----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p> <p>4. • 5. (현행과 같음)</p> <p>② 충주시장이나 상인조직·시장 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할 ----- 고객과 -----.</p> <p>제5조(인정시장의 기준 등) 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용역업-----.</p>
<p>1. (생 략)</p> <p>2. <u>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 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u></p> <p>② 점포의 수를 <u>산정할 때에는</u></p>	<p>1. (현행과 같음)</p> <p>2. <u>상가건물이나 복합형 상가건물이면 판매·영업시설----- 전체면적-----</u></p> <p>② ----- 계산해서 정할---</p>

현 행	개 정 안
<p>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u>동일한</u>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u>영위할</u>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p> <p>제6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p> <p>① 인정시장구역은 <u>도매업</u> · <u>소매업</u> 또는 <u>용역업</u>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②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p> <p>③ 인정시장으로 고시한 후 인정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u>공동시설</u> 및 <u>고객편의시설</u>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p> <p>제7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p>	<p>----- ----- ----. ---- 같은 ----- -----하면 각각을 -----.</p> <p>제6조(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p> <p>① ----- 도매업 · 소매업 · 용역업----- ----- ----- ----- -----. ② ----- 구분하여야 하며, 1필지 중 일부가 포함되었으면 -----. ③ ----- ----- -----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공동시설과 ----- ----- -----.</p> <p>제7조(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터) ① ----- -----터----- -----.</p> <p>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p>

442

현 행	개 정 안
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 -----
2. <u>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u>	2. 상권 ----- ----- ----- ---- 공동시설과 -----
3. 제6조제2항에 따라 <u>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u>	3. ----- 계산해서 정한 ----- 대지나 건축물의 전체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전체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될 때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제8조(<u>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u>)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u>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터</u>) ----- ----- 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2. -----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u>교육연구 및 복지시설</u> (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u>도매업 · 소매업</u> 또는 <u>용역업</u> 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5. 그 밖의 <u>교육연구와 -----</u> ----- ----- <u>도매업 · 소매업</u> · <u>용역업</u> ----- -----
제9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제9조(인정시장의 인정취소) ①

844

현 행	개 정 안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 ---.
제13조(<u>시장 활성화구역의 관리</u>) <u>시장은 시장 활성화구역을 시장에</u> 준하여 관리한다.	제13조(상권 활성화 구역의 관리) 충주시장은 상권 활성화 구역----- -----.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u>시장은</u> <u>법 제14조제1항에</u> 따라 임시 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충주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
제15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u>연면적</u> 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u>자(시장은</u> <u>제외한다)</u> 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임시시장의 등록) ----- ----- ----- 전체면적----- ----- ----- 자(충주시장은 제외한다)는 충주시장----- ----.
제16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 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u>시장이</u>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u>유지</u>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u>청소</u> 및 방범 활동	제16조(임시시장의 관리) ----- ----- ----- ----- ----- ----- ----- 충주시장이 ----- ----- ----- 1. ----- 유지와 ----- 2. ----- 청소, -----

현 행	개 정 안
3. 고객의 <u>안전유지</u> 및 고객과 <u>인근지역</u>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3. ----- <u>안전유지와 고객 · 인근 지역</u>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7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u>시장은</u>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u>해당될</u> 경우에는 등록 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총주 시장은 ----- ----- 해당하면 ----- -----.
1. <u>허위, 기타</u>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u>등록한</u> 경우	1. 거짓, 그 밖의 ----- ----- 등록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u>아니하거나</u> 30일 이상 계속 <u>휴업한</u> 경우	2. ----- ----- ----- 않거나 ----- ----- 휴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4. ----- 때
제18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u>시장은</u> 공설시장의 빈 <u>점포</u>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u>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u> 및 수산물 (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u>매장</u> (이하 “ <u>농어민 직영매장</u> ”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총주시장은 ----- 점포나 -----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 수산물 (가공물 · 조리물 ----- ----- ----- -----.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u>시장은</u>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총주시장----- -----총주시-----

846

현 행	개 정 안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u>해당 시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u>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 ----- <u>충주시-</u> ----- <u>농산물·</u> <u>임산물·축산물·수산물-----</u> . -----.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u>시장은 제18조에 의해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u>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u>충주시장은 제18조에 따라 ----- 점포나 ----- 운영하면 -----.</u> -----.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6장 상인회 설립과 등록
제22조(상인회의 설립) ① <u>시장·시장 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u> 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u>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u>	제22조(상인회의 설립) ① <u>시장·상권 활성화 구역·상점가-----</u> ----- -----. ② ----- <u>1명-</u> ----- <u>실제로 영업하는 상인이 회원이 되는 -----.</u> <u>다만-----</u> ----- -----.

현 행	개 정 안
<p>제23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면,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p> <p>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3조(상인회 정관 등) ① ----- 운영에 ----- 규약이나 ----- ----- 정하며 ----- 제12조제5항을 포함하여야 -----.</p> <p>② ----- 변경하려면 -----.</p> <p>③ ----- 변경할 때----- ----- 충주시장-----.</p>
<p>제24조(상인회 등록 등) ①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p>	<p>제24조(상인회 등록 등) ① ----- 설립할 때에는 규칙 제12조 제3항----- 충주시장-----.</p> <p>② ----- 등록하려면 ----- - 충주시장----- 사무소가 있는 곳에 설립등기를 한다. -----.</p> <p>③ ----- ----- 수,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p>

848

현 행	개 정 안
수 있는 서류를 <u>구비하여</u>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갖춰 충주시장-----.
제25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u>시장</u> 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경우에는</u>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충주시장----- 해당하면 -----.
1.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u>자를</u> 상인회 임원으로 <u>선출한 경우</u>	1. ----- 자가 ----- 선출
2. 특정 종교의 <u>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u> 위주로 <u>운영하는 경우</u>	2. ----- 교리전파나 ----- 운영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u>대규모점포 또는 영</u>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u>요건을 상실한 경우</u>	3. ----- 대규모점포나 ----- 요건 상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u>취소한 경우</u> 시장은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취소하였으면 충주시장-----.
③ <u>시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u>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 절차를 <u>실시하여야 한다.</u>	③ 제1항제1호와 ----- 취소하려면 충주시장은 ----- 거쳐야 -----.
제26조(예산의 지원) ① <u>시장은</u>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의 사업 추진에 <u>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	제26조(예산의 지원) ① 충주시장 ----- 필요한 비용 ----- 범위-----.

현 행	개 정 안
<p>②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u>시장</u>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u>첨부</u>하여야 한다.</p> <p>③ <u>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u>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u>시장</u>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 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p> <p>제27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u>비치하고</u> 관리하여야 한다.</p> <p>1. ~ 6. (생 략)</p> <p>② <u>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u>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u>기산하여</u>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28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u>수입 및 지출 등</u>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u>공개하고</u>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제29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p>	<p>② ----- ----- 충주시장----- ----- ----- ----- ----- ----- 붙여 넣어야 -----.</p> <p>③ 보조사업을 완료한 상인회는 ----- 충주시장----- ----- ----- -----.</p> <p>제27조(서류비치 등) ① ----- ----- ----- ----- 갖춰 놓-----.</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제5호와 ----- ----- ----- ----- 계산을 시작----- -----.</p> <p>제28조(운영상황의 공개) ----- 수입과 지출 등의 ----- ----- 공개하고 회원이 요구하면 ----- -----.</p> <p>제29조(보고와 자료제출) ① --- -----</p>

현 행	개 정 안
호의 사항을 <u>시장</u>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충주시장----- ----.
1. 시장 <u>관할구역</u> 안의 회원 변동 사항	1. --- 관할구역 ----- ----
2. 전년도 <u>시설현대화 및 경영 현대화사업</u> 추진실적	2. -----시설현대화 · 경영 현대화사업 -----
② 상인회는 <u>시장</u> 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u>요청하는</u>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충주시장----- ----- 요청하면 ----- -----.
1. 법 제11조 내지 제17조, 제20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용
2. 매 회계연도 <u>결산현황</u> 및 자산 관리 현황	2. ----- 결산현황과 -----
제3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u>시장은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u> 다음 각 호의 <u>업무를 행하는</u> 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u>의하여</u> 지정할 수 있다.	제30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충주 시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 상점가에 ----- 업무를 수행--- ----- 따라 -----.
1. 상업기반시설의 <u>유지 및 관리</u>	1. ----- 유지와 -----
2. <u>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활동</u>	2. 화재의 예방, 청소, 방범 활동
3. <u>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u>	3. 고객의 안전유지와 고객 ·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 · 불만 처리

851

현 행	개 정 안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p>② <u>시장은</u>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u>수행하는 경우</u> 시장의 특성에 따라 <u>당해</u>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u>범위</u>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31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p> <p>① <u>시장은</u>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0조에 <u>의한 시장관리자를</u>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 <u>시장은</u>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 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u>범위</u> 안에서 시장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u>전부</u>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충주시장은 ----- ----- 수행하게 되면 ----- -- 해당 ----- 고려----- ----범위----- ----</p> <p>제31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p> <p>① 충주시----- -----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였을 때-- ----- -----.</p> <p>② 충주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 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 하였으면 예산의 <u>범위</u>----- ----- 전부나 -----.</p>
<p>제32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p> <p>① <u>시장은</u>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1. 업무를 <u>태만히 하여</u> 상인들의 불만이 <u>높은 경우</u></p> <p>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u>발생한 경우</u>,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p>	<p>제32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p> <p>① 충주시장은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p> <p>1. ----- 게을리하여 --- ----- 높을 때</p> <p>2. ----- ---- 발생했을 때, 다만 가벼운 화재-----.</p>

852

현 행	개 정 안
<p>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u>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u></p> <p>(2) 제1항에 따라 지정을 <u>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 라 청문 절차를 거친다.</u></p> <p>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3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u>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 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 시설</u></p> <p>2. 제1호외의 시설물로서 <u>정부 및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 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시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2) <u>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u></p>	<p>3.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 했을 때</p> <p>② ----- 취소하려면 ----- -----.</p> <p>제8장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 제33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u>법 제11조와 ----- ---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 · 상점가----- 총주시장----- -----.</u></p> <p>1. 정부와 시가 설치비용 ----- ----- 기반 시설과 화장실 등의 ----- ---</p> <p>2. ----- 정부와 ----- ----- ----. ----- 않아 ----- 총주시장----- 따라 총주시장----- 않을 -----.</p> <p>② 시설현대화사업으로 ----- ----- 따른 상인조직과 -----</p>

현 행	개 정 안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u>상인조직에게</u>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u>시장이</u> 인정하는 시설물	2. ----- -- ----- -----상인조직에----- ----- ----- -----충주시장-----
<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 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 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u>	<u>③ 충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등기를 60일 이내에 마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춰 놓고 시설물의 관리와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u>
<u>④ 정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시·상인 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u>	<u>④ 정부나 충주시----- ----- 시설물과 ----- ----- 시설물은----- ----- 있더라도 시설물을 폐기·매각하려면 반드시 충주시장----- 남은 가치----- 때----- -----.</u>

현 행	개 정 안
<p>제34조(위탁관리) ① <u>시장은 시장</u> · <u>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u> · <u>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주시 주차장조례」, 「충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u>상인조직</u>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u>시장 관리자</u>(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u></p> <p>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u>대상범위</u>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u>사용료</u>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제34조(위탁관리) ① <u>충주시장은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상점가</u> <u>제104조제3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u> <u>상인조직이나</u> <u>위탁하여 관리할</u>.</p> <p>② <u>충주시장</u> <u>위탁할 때</u> <u>.</u></p> <p>③ <u>대상범위와</u> <u>사용료나</u> <u>.</u></p>
<p>제3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u>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u></p>	<p>제35조(수탁자의 의무) ① <u>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할 때 입점상인, 시장·상권 활성화 구역·상점가</u> <u>최대</u> <u>.</u></p>

현 행	개 정 안
<p>② 수탁자는 <u>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 충주시장----- -----마음대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 --.</p> <p>③ ----- ----- 징수 때문에 ----- -----.</p> <p>④ 제2항을 위반하여 충주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받은 수탁자는 명령을 따라야 한다.</p>
<p><u>제36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u>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p>	<p><u>제36조(사용료와 경비 징수 등)</u> 공영주차장과 공중화장실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용료와 필요경비를 징수 할 수 있다.</p>
<p><u><신 설></u></p>	<p><u>제36조의2(국유지·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2호와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국유지·공유지 사용료·대부료·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로 한다.</u></p>
<p><u><신 설></u></p>	<p><u>제36조의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충주시장은 상권 활성화</u></p>

856

현 행	개 정 안
	<p>구역의 상인과 고객이 충주시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을 주로 사용할 때에는 「주차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p>
<p>제37조(지도·감독) ① <u>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 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u></p>	<p>제37조(지도·감독) ① 충주시장 ----- 의무 사항과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p>
<p>② <u>시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 (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u></p>	<p>② 충주시장은 시설물 관리·운영 현황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 · 수시로 ----- ----- ----- ----- ----- ----- ----- -----.</p>
<p>③ <u>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③ ----- 조사·검사 결과 바로잡아야 사항이 있으면 ----- ----- ----- ----- ----- 하여야 -----.</p>
<p>제38조(위탁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시설물 관리·운영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제38조(위탁의 취소 등) ① ----- 발생하면 충주시장----- ----- ----- ----- ----- ----- ----- -----.</p>
<p>1. 부정한 방법으로 시장관리인</p>	<p>1. ----- ----- ----- ----- ----- ----- ----- -----.</p>

현 행	개 정 안
지정을 받은 때	----- 받았을 --
2. 시장의 승인 없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변경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2. 충주시장----- 시설물 설치, 시설물 변경, -----
3. 사용료 부당징수, 시정명령 위반이 3회에 달한 때	3. ----- -----달하였을 --
4. 관리·운영능력이 불량한 자 등 시장관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 ----- 않을 --
제3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u>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u>	제39조(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 충주시장은 상인조직이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행정절차 이행이 관계 법령에 따라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하며,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다.	제40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충주시장----- 영 제35조를 따른다.
제41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41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충주시장은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송부한다. 이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충주시장-----

현 행	개 정 안
<p>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제42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1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시장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② ----- 발부한 날부터 -----. 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충주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 ----- 별지 제2호서식의 ----- -----.</p> <p>제42조(강제징수) ----- ----- 독촉기간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충주시장----- -----.</p>
<p>제4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p> <p>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p>	<p>제43조(이의제기와 법원으로의 통지) ① 충주시장-----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제기하려면 ----- 충주시장-----.</p> <p>② 제1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충주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지한다.</p>
<p>제44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u>부과·징수 수납</u> 이외의 사항은 「충주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p>	<p>제44조(지방세의 준용) ----- ----- 부과·징수·수납 ----- 「충주시세부과 징수규칙」 -----.</p>
<p>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5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 -----.</p>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라 한다)로 등록된 시장(이하 "등록시장"이라 한다)
 - 나.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곳(이하 "인정시장"이라 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

-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5.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8. "시장정비구역"이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승인·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9. "시장정비사업조합"이란 제32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0.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1. "복합형 상가건물"이란 같은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 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10356호, 2010.6.8>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제30항 중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